

소 장

원 고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주소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번지(우편번호)

피 고 1. △ △ △ (주민등록번호, 양부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(우편번호)

2. □ □ (주민등록번호, 양모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(우편번호)

3. ♦ ♦ ♦ (주민등록번호, 친양자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(우편번호)

친양자입양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○○법원 20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. . .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1. △ △ △, 피고 2. □ □ □와 피고 3. ◇ ◇ ◇ 사이에 성립한 친양자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피고 3. ◇ ◇ ◇의 친생의 부인데, 최근 피고 3. ◇ ◇ ◇이 피고 1. △

 \triangle \triangle 와 피고 2. \square \square 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



- 2. 원고는 20○○. . . 피고 3. ◇ ◇ ◇과 함께 ○○시 인근 캠핑장에 갔다가, 위 피고 3. ◇ ◇ ◇을 잃어버린 이후 경찰서에 실종선고를 접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.
- 3. 한편, 피고 3. ◇ ◇ ◇은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던 중, ○○법원 20 느호 심판에 의하여 원고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고, 원고는 위 사실을 20○○. . . 알게 되었습니다.
- 4. 피고 3. ◇ ◇ ◇의 친생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 1. △ △ △, 피고 2. □ □
 □가 피고 3. ◇ ◇ ◇을 친양자로 입양할 당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, 민법 제908조의 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가족관계증명서(원고)

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피고3.)

주민등록등본(피고1. 또는 피고2.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각 1통 1통

1. 납부서

1통

20 O O 년 O 일 O 의 원 고 O O O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제출법원	· 양부모 중 1인의 보통 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·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제 척 기 간 ※ 아래(1)참조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
제기권자	·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 (민법 제908조의4 제1항)
상 대 방	·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항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(가사소송법 제31조제24조제1항, 제2항) · 양친과 친양자가 모두 생존해 있을 경우, 이들 3명이 피고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됨 ·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(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3항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 법 규
불복절차 및 기간	・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・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
비 용	・인지액: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
친양자	1. 천양자로 될 자의 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
입양취소 사유	2.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3.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수 없게 된 때

※(1) 제 척 기 간

- 1.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 (민법 제908조의4 제1항)
- 2.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알면 족하고, 친양자 입양의 법률효과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